

보건의료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이른바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IT, 금융, 의료 등 서로 다른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하였고,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하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는 2020년 9월 28일 자 뉴스레터 참고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305>)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은 가명처리 등에 있어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발간된 것으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이후 공개된 최초의 분야별 가이드라인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특정 산업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발간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 활용에 있어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명처리 개념 및 단계별 적용원칙

-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은 가명처리 단계별 처리원칙에 대해서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에서 특별히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명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총 4단계로 분류될 수 있음

- ① 사전준비: 가명처리 목적의 적합성 검토 및 준비 단계
- ② 가명처리: 가명처리의 수준을 정의하고 처리하는 단계
 - 대상선정: 활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가명처리 대상 항목 선정
 - 위험도측정: 처리환경 검토, 처리정보 항목별 위험도 등 분석
 - 가명처리 수준 정의: 위험도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필요한 수준 정의
 - 가명처리: 가명처리 수준 정의에 따른 가명처리 수행
- ③ 검토 및 추가처리: 가명처리 수준 정의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리 여부 확인하고, 재식별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
- ④ 사후관리: 개인식별 가능성 증가 지속 모니터링 및 적절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단계

2. 대상정보 및 가명처리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관 내 가명정보 활용, 기관 외부로 가명정보 제공 여부 및 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① 정신질환 및 처방약 정보, ②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 정보, ③ 후천성면역결핍증 정보, ④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정보, ⑤ 학대 및 낙태 관련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별히 가명처리하여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득한 후 활용할 수 있음

-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는 방식 이외의 신기술 등 다른 방법과 이를 채택한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가명처리를 할 경우, 적절성·효과성·안전성 등을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받은 뒤 심의위원회 승인하에 실시
-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 유형별 가명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음

- 1) 식별자 : 삭제 또는 일련번호로 대체
- 2) 주요 인적사항 : 삭제하거나, 연구목적 상 유의미한 일부 정보를 발췌하는 방식으로 식별력을 충분히 낮춤
- 3) 속성값 : 데이터 속성별 처리방법
 - 측정수치 정보, 의료인의 관찰·입력 정보, 알고리즘이 생산한 건강정보, 유전체를 제외한 오믹스 정보 : 별도의 조치 불요
 - 체외를 촬영한 영상정보, 체내를 촬영한 영상 정보, 단층촬영·3D이미지 정보 : 각 정보의 특성에 따른 조치 필요
 - 음성정보, 지문 등 생체인식정보 : 가명처리 가능여부 유보(본인 동의 기반으로만 사용 가능)
 - 유전체정보 :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처리 가능 여부 유보 (예외를 제외하고, 본인 동의 기반으로만 사용 가능)

3. 가명정보의 처리(결합) 및 활용 절차

- 가명정보를 재제공할 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금지되며,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되는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되지는 않으나, 사회적인 통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데이터 활용 대가는 지양할 것을 권장됨

- 가명정보 결합 시 원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들 각각의 승인을 받은 뒤, 결합신청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 지정 결합전문기관 중 하나에 결합을 신청함
-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이 규정하고 있는 가명정보의 처리(결합) 및 활용 절차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법무법인 세종은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을 비롯한 국내외 개인정보 규제,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응,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등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3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 관련 제도개선에 있어 민간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의료 빅데이터 관련 비식별화 기술 개발 용역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3법, 가명처리와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us



강신욱

파트너변호사

T. 02-316-4059

E. sokang@shinkim.com



장준영

파트너변호사

T. 02-316-4410

E. jyojang@shinkim.com



홍수희

파트너변호사

T. 02-316-4315

E. shhong@shinkim.com



박창준

소속변호사

T. 02-316-1660

E. cjpark@shinkim.com



윤호상

소속변호사

T. 02-316-2584

E. hsyoon@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